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
------	----

제출년월일 : '98. 9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 내용중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조직개편으로 계체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조정
- 나.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조정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사무과장과 직원"을 "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으로,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사무과장과 직원</u>(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u>사무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생략)</p> <p>③ <u>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u></p>	<p>제2조(조직) ① ----- ----- <u>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u> ----- ----- <u>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u> -----</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전문위원은 의회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p>